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05. 1. 14
[조례 제135호]

개정 2007. 3. 23 조례 제 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8. 8. 6 조례 제 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 1. 7 조례 제 36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15. 5. 8 조례 제 576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12. 23 조례 제 71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 12. 28 조례 제 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2019. 2. 22 조례 제 855호
일부개정 2020. 10. 16 조례 제 937호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 12. 29 조례 제 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 예보·경보,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3. 장비·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
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재난대책본부”라 한다) 및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처리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 외에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두며, 각각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차장: 부군수
 2.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3. 대변인: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4.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다만, 해당 부서의 국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다만, 해당 부서의 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난 수습 부서의 공무원 중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
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3. 대변인: 재난 수습업무 홍보
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및 실무반 임무 총괄
6. 실무반: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는 별표 2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대책본부의 편성기준과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발생 시: 별표 3
2. 사회재난 발생 시: 별표 4
3.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 별표 5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6>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2. 해당 재난의 수습과 관련된 부서의 장
3.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4.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5.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증평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공동단장
6.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본부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대책본부 통제관
3.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군 관할 구역 내의 관계 기관의 장

나. 관련 기관의 공무원 중 재난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공유·협조체계의 구축) 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도 대책본부 및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군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부칙(2019. 2. 22 조례 제85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0. 16 조례 제937호,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증평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공동단장

부칙(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 12. 29〉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증평군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자치행정과 미래전략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정보통신 사고	자치행정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기획예산과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재난안전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재무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나.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과 또는 소관부서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축산산림과 건설교통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기업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위생과 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경제기업과
13. 국토교통부	가. 도로터널 사고 나.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다. 육상화물운송 사고 라.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교통과 수도사업소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14. 행정안전부	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다.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재난안전과 및 소관부서
15.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재무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재난안전과
17.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18.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축산산림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증평군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3 및 별표 4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재난	가. 풍수해 (태풍·호우·대설)	1)증평균 비상 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1)증평균 비상 단계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회재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르는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증평균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표 3] <개정 2022. 12. 29>

자연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2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증평군 비상단계

대책본부장	군수		
차 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3+α+β명	
	반 장	상황관리 총괄반장 (재난안전과 공무원 중 통제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 상 황 관 리 총 괄 반 (2+α명)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2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안전상황실 1명, 재난 총괄/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2) 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재무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위생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소관별 해당 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경제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문화관광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재난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건설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 스 지원반	· 보건소, 환경위생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피산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증평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대책본부장	군수		
차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제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담당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원	총 5+a+β명	
	반장	상황관리 총괄반장 (재난안전과 공무원 중 통제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4+a명)	가)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라) 행정지원팀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4명 - 재난안전상황실 1명, 재난 총괄/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자치행정과 직원 1명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재무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위생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소관별 해당 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문화관광과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재난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건설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환경위생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피산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증평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 제 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		
실 무 반	인 원	총 6+α+β명	
	반 장	상황관리 총괄반장 (재난안전과 공무원 중 통제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상 황 관 리 총 괄 반 (5+α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다) 상황관리 총 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 라) 행정지원팀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2명, 재난 총괄/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자치행정과 직원 1명
	2)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재무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위생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소관별 해당 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문화관광과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재난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건설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환경위생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괴산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증평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화산 발생 시 편성기준

가. 증평군 비상단계

대책본부장	군수	
차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제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담당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	
	인원	총 3+α+β명
	반장	상황관리 총괄반장 (재난안전과 공무원 중 통제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실무반	1) 상황관리 총괄반 (2+α명)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2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 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2)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재무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위생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소관별 해당 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문화관광과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재난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건설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환경위생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괴산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증평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비상1단계

대책본부장	군수		
차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제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담당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원	총 5+ α + β 명	
	반장	상황관리 총괄반장 (재난안전과 공무원 중 통제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4+ α 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다)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라) 행정지원팀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4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 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자치행정과 직원 1명
	2)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재무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위생과
		다) 긴급통신 지원반	·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소관별 해당 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문화관광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재난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건설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환경위생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괴산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증평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대책본부장	군수
차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제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담당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실무반	인원	총 6+α+β명	
	반장	상황관리 총괄반장 (재난안전과 공무원 중 통제관이 지명하는 사람)	
	1)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라) 행정지원팀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2명, 재난 총괄/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자치행정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재무과, 재난안전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위생과
		다) 긴급통신 지원반	·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소관별 해당 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문화관광과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재난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건설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환경위생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피산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증평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민간 단체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4] <개정 2022. 12. 29>

사회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2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대책본부장	군수		
차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제관	해당 재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인원	총 10+α+β+γ명	
	반장	상황관리 총괄반장 (재난안전과 공무원 중 통제관이 지명하는 사람)	
	1) 재난 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지원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위생과
		다) 긴급통신 지원반	· 자치행정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민원소통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문화관광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재난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건설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괴산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증평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육군 제2161부대 2대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한국가스안전공사충북본부, 충청에너지서비스, 한국전력공사 증평괴산지사 등 재난관리책임 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수습 주관 부서의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5]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제8조제2항제3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 및 역할
가. 상황 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신문 등 언론보도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증평군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 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응 급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피 해시설 기능 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홍 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군대책본부의 재난 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 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 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실태 파악 보고 라) 긴급수송 지원 마)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 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의 팀은 상황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 실무반 인원은 상황에 따라 소속부서에서 대기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중앙 및 군 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군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증평군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 및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